

전용허가 · 신고 없이 축사 신축 가능

개정 농지법 시행... 국토계획 · 건축법은 일정행위 제한

그동안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지난 1월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어 전용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개정 · 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물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게 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

상기 해당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법령의 다른 규정에 따라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셋째, 시 · 도지사가 1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 ·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1ha까지),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 · 상업 · 공업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ha까지는 시 ·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들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번 농지법개정을 통하여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양동**